

등록번호

여성인권-자료집-2020-10

4차 정책토론회 (온라인)

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

”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일시

2020. 11. 25. (수) 13:00~15:00

진행

온라인토론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

### 1 사업개요

○ 일시\_ 2020.11.25.(수), 13:00~15:00

○ 진행\_ 온라인 스트리밍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는 오프라인 참석(폐렴타워 폐렴홀)

### 2 프로그램

\*좌장: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분	시간	내용
인사	13:00 ~ 13:15 (15분)	박봉정숙 원장 인사말 / 김경선 차관 축사 토론회 취지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주제 발표	13:15 ~ 13:35 (20분)	<b>[발표]</b>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은 어떻게 여성폭력을 확장하는가 ·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13:35 ~ 13:50 (15분)	<b>[토론1]</b>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노력과 과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김미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
	13:50 ~ 14:05 (15분)	<b>[토론2]</b>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 개정과 향후 과제 · 김현아(김현아 법률사무소 변호사)
	14:05 ~ 14:20 (15분)	<b>[토론3]</b>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방향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전체 토의	14:20 ~ 14:50 (3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의
폐회	14:50 ~ 15:00 (10분)	폐회 및 정리

※ 상기 내용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 Contents

<b>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은 어떻게 여성폭력을 확장하는가</b> .....	<b>09</b>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II.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노력과 과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b> ...	<b>21</b>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	
<b>III.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 개정과 향후 과제</b> .....	<b>37</b>
김현아 김현아 법률사무소 변호사	
<b>IV.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방향</b> .....	<b>47</b>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은 어떻게 여성폭력을 확장하는가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은 어떻게 여성폭력을 확장하는가

장 미 혜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11

### 발 표 순 서

- 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기반여성폭력의 특징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기반여성폭력의 특징

### 젠더폭력과 기술이 결합한 젠더 폭력의 양상

- 기존의 성폭력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 간 폭력의 성격
  - 실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에 대해 법률적인 처벌이 이루어짐

###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젠더폭력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가?

- 과학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를 재구조화하고 있음
- 기존에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행해지던 물리적인 폭력과 다름

## 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기반여성폭력의 특징

- 디지털 성폭력 역시 기존의 성별 위계 구조 속에서 행해지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여성
- 여성의 몸이 남성의 지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기존 젠더폭력의 연장선
- 전체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93%: 디지털 성폭력 또한 사회적으로 위계화 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 신체를 매개로 하지 않는 성폭력
- 여성의 피해 경험이 많은 사람 사이에 알려지고 공유되면서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상인 경험으로 변화
- 성폭력이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모욕과 굴욕감을 주는 방식, 즉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방식(victimisation)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

## 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기반여성폭력으로 나타난 피해 양상

### 특수성과 일상성

- 기존의 성폭력 : 신체를 매개로 피해자에게 직접 가하는 폭력이자 특수한 경험
- 온라인 성폭력 : 온라인 상에서 관계를 맺는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경험

### 확산성과 영속성

- 확산성 : 다수의 가해자가 죄의식 없이 유포, 재유포를 반복하며 성착취물이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확산
- 영속성 : 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공간'을 통해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람에게 유포되며 영구적인 피해

### 고립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 2차 피해를 통한 재희생화(re-victimization) 발생

## 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기반여성폭력으로 나타난 가해 양상

### 폭력 행사 의식 저조

- 가해자들은 성착취물에 나타난 이미지가 실재하는 여성의 몸이 아니기에 이를 유포하는 것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식이 없고, 마찬가지로 죄의식이 부재함

### 익명성으로 인한 죄의식 부재

- ID 뒤에 숨어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함. 또한 복수의 가해자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다르게 자신이 가해자라는 죄의식이 없음

## 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폭력: 기술기반여성폭력 규제의 어려움

### 초국가적 문제

- 물리적 공간 제약을 넘어 온라인 상으로 무한히 유포, 변형 등 재생산되기 때문에 온라인 성폭력은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 세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 국가의 법적 규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역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후속 입법과제와 쟁점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그루밍Grooming)처벌죄 신설
- ▶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위한 성적 유인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충속 등을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그루밍에 대해서는 성적 그루밍의 정의, 범죄구성요건,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되고 있음
- ▶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기 전의 단계에 개입하여 이를 적발·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음
- ▶ 그루밍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의 신뢰관계(교육, 보호, 감독자 등)또는 자문관계, 치료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상담실에서의 성폭력, 종교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그루밍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제기됨
- ▶ 제21대 국회에서는 권인숙의원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수사특례규정(위장수사 등)이 반영된 「청소년 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여성가족위에 제출되어 있음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1.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성적 이미지의 경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많은 사람이 조회할 경우 조회수를 통해 **상업적인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함
- **여성주의적 범죄학(feminist criminology)**이 추구해야할 사법적인 정의는 보다 피해자 중심적이고, 통상적인 사법적 처벌규정을 넘어서는 공동체 중심이거나 비공식적인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2.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 현재 경찰청에서 받는 사이버 범죄 신고 범위는 인터넷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몸캠 피싱, 사이버 도박 등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
- 경찰청에 여성 및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 접수, 조사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마련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신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 즉시 삭제 필요
- 영국의 경우 '국가범죄수사국'(NCA) 산하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학대 보호센터(CEOP)를 통해 아동 성착취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을 전담하여 수행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2.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 위장수사(잠입수사)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 한국에서 위장수사는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관이 신분을 가장해 수사 대상자와 접촉하거나 특정 조직 등에 잠입하여 범죄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하며 잠입수사라고 불리기도 함
-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목적 또는 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범행유인에 적합한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범행을 유발 또는 노출시킨 다음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포착하는 특수한 수사방법인 '위장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음
- 익명성에 기반한 텔레그램, 다크웹의 경우 공개적인 접근이 어렵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장수사를 통한 범죄자의 색출·검거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위장수사(잠입수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3. 수사관련 개선사항: 디지털 성범죄 담당 여성 수사관 확충

- 현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는 여성 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여성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불쾌함을 줄이고 나아가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2차 피해의 우려를 낮추고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여성 수사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성폭력 수사가 양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여성 수사관의 확보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여성 수사관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음
-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조사를 여성 수사관이 전담해야 하지만, 여성청소년 수사팀 구성원 중 남성 수사관들이 훨씬 많아 여성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남성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상황 → 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다른 수사관이 각각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3. 수사관련 개선사항: 디지털 성범죄 담당 여성 수사관 확충

#### - 여성 청소년 수사에 있어서 여성 수사관의 비중과 역할 확대

-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신규 배치되는 수사관들에게 내실 있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더불어 여성청소년과의 근무여건을 향상해 경력을 갖춘 유능한 여성 수사관들이 오랜 기간 지속해서 수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피해자를 조사하는 여성 수사관과 가해자를 수사하는 남성 수사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유기적 협력체계는 2차 피해 방지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4.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조

- 불법촬영물을 다루는 행정 체계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성폭력과 유포자 처벌은 경찰이 담당하고, 촬영자 및 악성 유포자, 사이트나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변형카메라 수입업자에 대한 단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 **각 부처 간 업무의 유기적 협조** 필요
- 여성가족부에 의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업자도 성범죄물 유통방지의 책무를 가지게 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업체와 정부의 협력방안** 모색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5.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처벌

-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에 의한 비난에서, 언론에 공개되어 알려지는 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적음 → 2차 피해의 발생과 정도를 양형에 반영해야만 2차 피해가 감소할 것

## I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5.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처벌

- 피해자는 무리한 합의 요구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음 →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과정 등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 협박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합의 시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제재를 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아동법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할 필요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2차 피해로 보아 양형에 적극 고려하여 가중사유로 삼아야 함

**감사합니다.**



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노력과 과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

여성폭력 예방주간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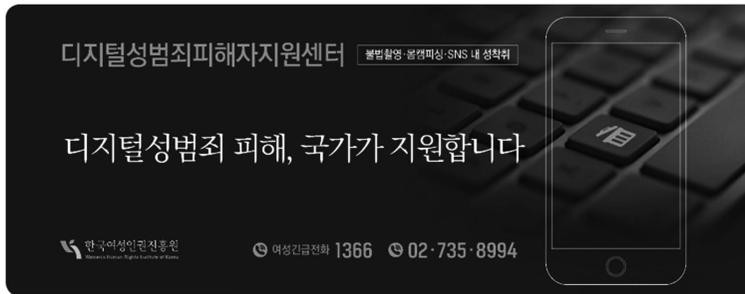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노력과 과제 : 정책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목 차

1.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특성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현황
3. 피해지원 현재 및 과제
4. 피해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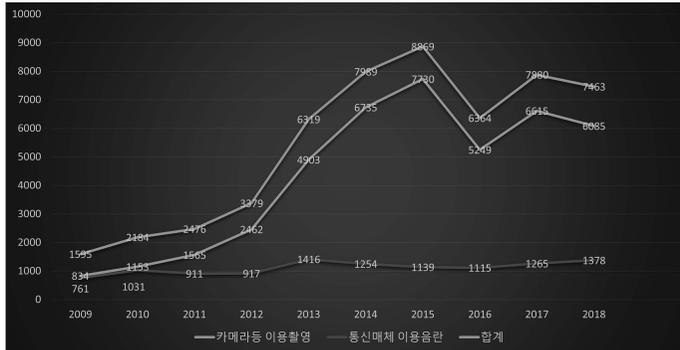
## 1.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특성

### 1.1 들어가며

-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특징**은 언제든지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이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재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지원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신속히 삭제하는 등 그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이다.

출처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 1.2 디지털 성범죄 현황



출처: 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1.3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2020.4.23)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설정
  -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 ③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④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
- 피해자 지원책의 내실화 강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이미지 출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무관용 원칙으로 뿌리 뽑는다"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26>

### 1.3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

**'n번방 방지' 관련 법 개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 공포·시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중연령

기존: 13세	▶ 개정: 15세(13세이상 16세 미만 시, 성인이 범죄자라면 영유년 차감)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 개정: 15년 이상 징역 (법규형 삭제), 공소시효 폐지(11월 20일부터 시행)
1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도난죄 이하 벌금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개정: 1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일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판매·시청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의제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도 동의없이 배포 시 제법)	▶ 개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작·배포	▶ 개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불법 통신망이용·배포	▶ 개정: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없음	▶ 위 각 항의 1/2 가중 (담배) (3년 포함)
상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개정: 1년 이상 징역
협박	▶ 개정: 1년 이상 징역
강요	▶ 개정: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없음	▶ 위 각 항의 1/2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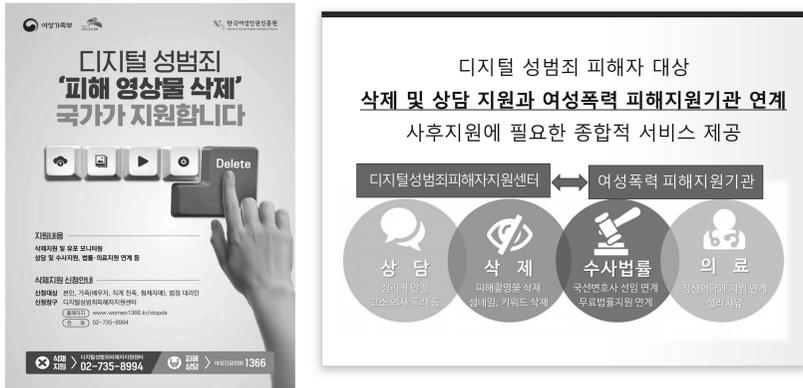
자료/영문부:   
 강령은 기자 / 20200519   
 투우단 @yonhap\_gonhwa 제1015호 tuney.kr/eth1

### N번방 방지 관련 법 개정

- 형법 개정 :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13⇒16세)
- 성폭력처벌법 강화 : 범죄의 법정형이 전반 상향  
⇒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청소년성보호법 전반의 처벌 형량 상향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판매·광고·소개 관련 죄목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에 처함
-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 삭제,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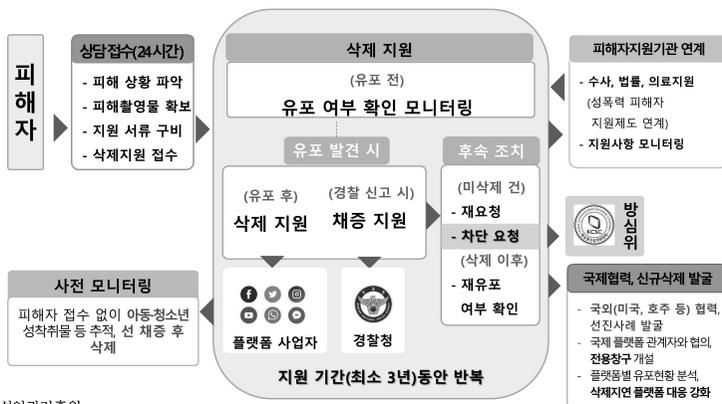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현황

## 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체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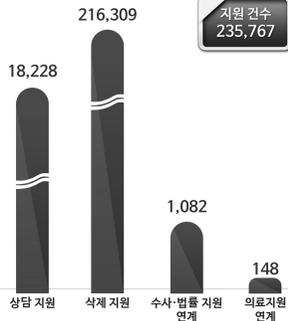
## 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체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현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



('18.4.30.~20.9.30.,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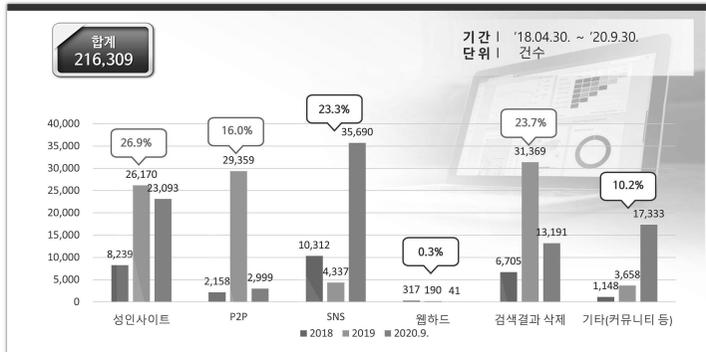
연도	지원건수 (합계)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18	33,921	4,787	28,879	203	52
2019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	100,468	7,706	92,347	379	36

- 2018년 4월말 개소, 총 235,767건 지원
- 총 지원건수 중 삭제지원(91.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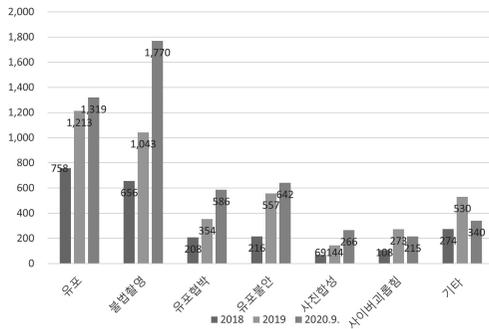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플랫폼별 삭제 조치 현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현황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피해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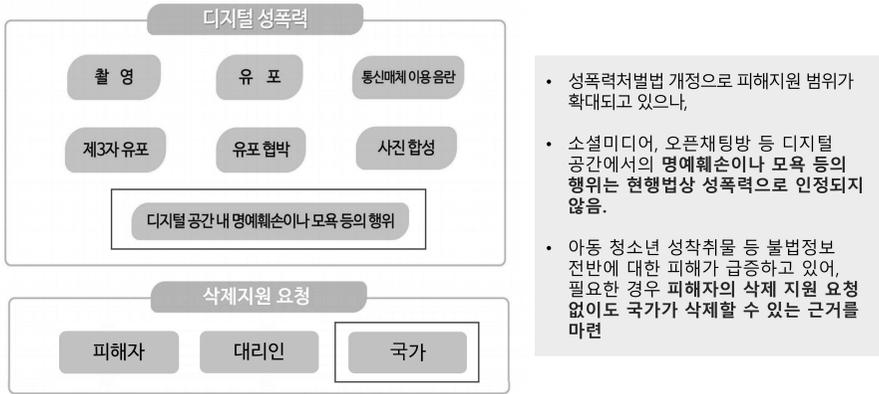


- 유포, 불법촬영 ⇒ 디지털 성범죄 대표 유형
- 유포불안 ⇒ 피해 인지가 어려운 특성 반영
- 기타 ⇒ 다양한 젠더폭력과 결합되는 특징,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양상 지속적 발생
- 텔레그램 성 착취 공론화 이후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 호소 증가

※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현재 및 과제

### 3.1 피해지원 영역 확대 필요



-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정보 전반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3.2 대응 부처 간 협력체계 현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3.3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현황



### 3.4 온라인 사업체와의 협력현황

- 소셜미디어 환경**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쉽게 활용
  - 신상정보 노출, 촬영물 게시나 업로드 용이
- 아동·청소년 접근성 용이**
  - 또래 놀이문화와 밀접한 연관성
- 플랫폼 내 자율 규제 미비**
  -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위한 전용 창구 필요
  - 랜덤채팅앱의 경우, 대화 내용 증거 등 수사 협조 난항
- 트위터 코리아**
  - 센터 삭제요청 전용 창구 개설(2019)
- 구글 코리아**
  - 센터 삭제요청 전용 창구 개설(2020)
  -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력간담회 시행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력간담회 시행(2020)
-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협업**
- 온라인 그루밍 범죄 증가에 따라 추후에도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와의 협업 확대 필요**

### 3.5 기술 개발 및 협력



-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42개 웹하드 사이트 대상
  - 키워드 기반 이미지 매칭 시스템



-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공유
  - 여성가족부, 경찰청 업무 협약 체결
  - 추적시스템 공유로 피해영상 수사정보 공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 DNA 필터링 기술 탑재된 시스템 구축(2019)
  - 시스템 활용으로 삭제지원 시행(2020)

#### 지속적인 협력 체계 강화 필요

- 기술 개발에 '피해자 지원 관점' 반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성을 토대로 자문 협력
- 딥페이크 범죄 대응 시스템, 유포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추가적인 기술 필요

## 4. 피해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4. 피해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국가적 차원 접근>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방지기술을 위한 부처간 연계 활성화

-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기술 개발 관련 장기플랜 수립 및 시행
- 기술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 및 모니터링, 예산 확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정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자체 신설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기관 역할 정립 및 기관 간 연계 활성화
-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 효율성 제고 및 확대

#### 4. 피해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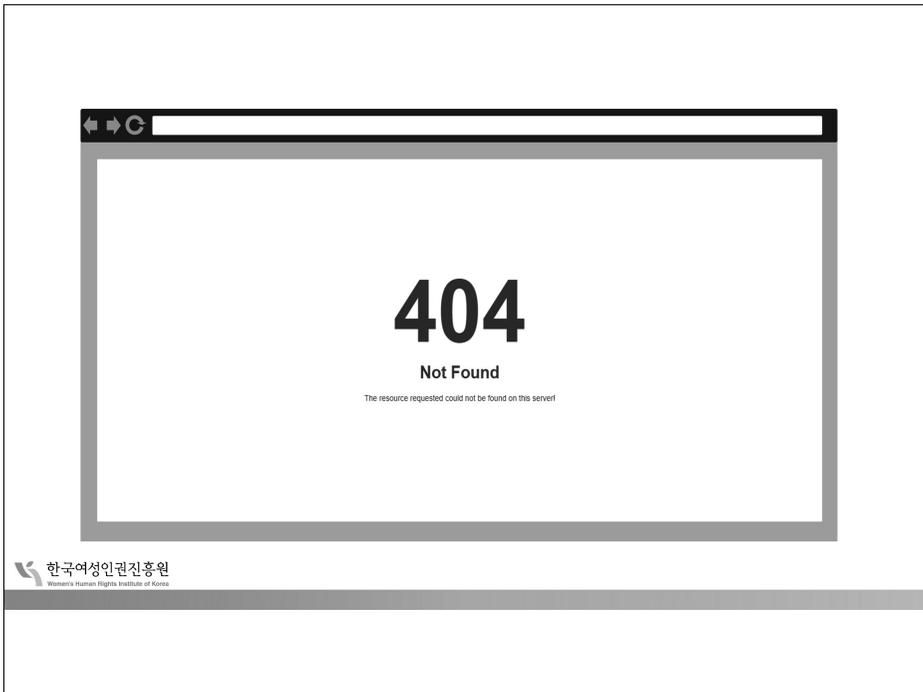
<기술적 조치 및 국가별 피해지원 협력 강화>

##### 온라인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강화

-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의 유통여부 지속 모니터링
- 불법영상물 유통 발견 시 즉각 차단 및 삭제조치 시행
- 불법영상물 실시간 감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자체 자정노력 의무 강화

##### 국제 공조 및 국가별 피해지원 협력 강화

-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 강화
- 피해자원을 위해 국가별 협력체계 구축 및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 차원의 노력으로 온라인 상의 다양한 문제에 신속·혁신적으로 대응
- 사후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온라인 안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omen1366.kr/stopds](http://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피해상담**  
여성긴급전화1366

#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 개정과 향후 과제

김현아 김현아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 개정과 향후 과제

김현아 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벌금형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제2조(정의)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개정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목개정 2020. 6. 2.]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0.11. 20시행 .2020.5.19일부개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전반적인 법정형 상향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0.11. 20시행 .2020.5.19일부개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전반적인 법정형 상향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벌금형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신설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24.][시행일 : 2020. 6. 25.]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신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 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항의 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 21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기존의 수사 기법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 지능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필요한 수사기법의 도입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

-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제 법안

## 21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안 발의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운영자들이 불법촬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 디지털 성범죄를 이용한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

## 향후과제

### ▶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의 삭제

-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
- 정조에 관한 죄의 잔재

###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 도입

### ▶ 촬영물 '이용' 범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외의 범죄는?

### ▶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마련





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IV

##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방향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여성폭력 예방주간 정책토론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 피해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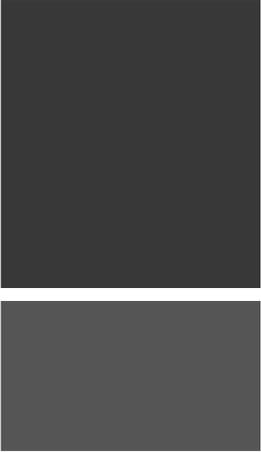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1. 피해자 없는 범죄?

####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론화 이후,

#### ■ 경찰

-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 사이트, ④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를 집중 단속하고 텔레그램방의 운영자와 공범,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등을 검거했다고 밝힘
- 확인된 피해자 714명 중 660명 특정, 그중 651명 대상 신변보호, 심리상담 지원
- 그러나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음
- 이유: 1)수사가 인지된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피해자 조사의 필요성이 없었다, 2)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답변을 받음



■ 지금까지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 범죄가 아니라 남성들의 성욕 또는 일탈
-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 없는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

☞ 그래서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 했음

피해자 없는  
범죄가 될 때,  
그 문제점 ①

범죄 구성요건의 문제: 모든 법은 보호법익이 존재함. 성폭력에 관한 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음란물’은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피해자 없는 범죄로 구성되어 왔음.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은 여전히 이 범죄를 ‘음란물’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 피해자 없는 범죄가 될 때, 그 문제점 ②

형량의 문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벌의지, 피해자의 피해정도, 추가 피해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게 됨.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의 낮은 형량이 심각하게 지적되었는데 피해자 없는 범죄가 되면 낮은 형량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음

## 2.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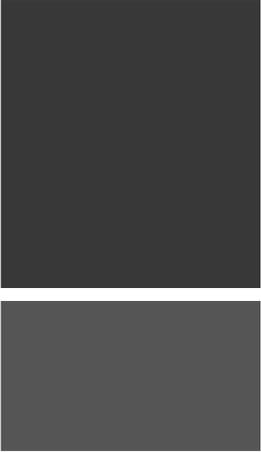
- 피해자 지원기관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 SNS와 채팅앱이 익명 기반이며 유포/재유포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짐
- 가해자 특정되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진척되지 않음
- 가해자가 특정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인지 확인이 어렵고, 자신의 사건은 경찰 신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이럴 때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범죄 피해물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피해사실을 확인할 방안이 강구해야 함
-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자 또는 추가 피해사실이 등장하였을 경우 업무의 협조를 통해 추가 기소해야 함
-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해외 수사기관과 상시적인 업무 공조가 필요함

### 3. 종결 없는 범죄, 종결 없는 피해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술 매개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할 때 피해자지원기관이 가장 무력함을 느끼는 것은 이 사건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는 경우임
- 기존의 젠더기반폭력들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종결을 기대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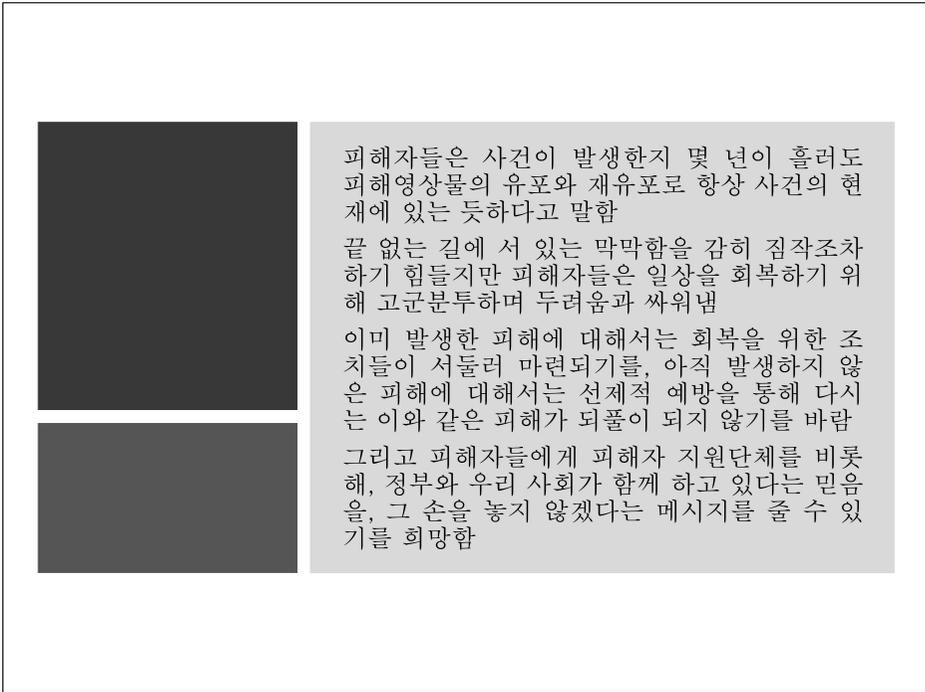


- 그러나 기술매개 폭력은 예측을 넘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이 끝난다”는 말조차 성립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일상이 무너지는 것
-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과 같음. 피해지원의 종결은 사건의 종결 이후 피해자의 일상까지 회복되었을 때 완료된다고 할 수 있는데, 기술매개 폭력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의 종결이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음



그럼에도  
피해자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 피해가 끝나지 않는 것은 유포/재유포 때문임. 유포/재유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미하다는 인식 있지만 강력한 처벌이 필요
- 유포/재유포를 막고 이미 유포된 피해물을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필요: 피해 회복될 때까지 심리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

---

발행일	2020년 11월 25일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연락처	전화 02-735-1050 팩스 02-6363-8494 홈페이지 <a href="https://www.stop.or.kr">https://www.stop.or.kr</a>
등록번호	여성인권-자료집-2020-10
디자인·인쇄	디자인인 02-783-8582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